

신문론 사립님

P R E S S A R B I T R A T I O N C O M M I S S I O N

08

2016 + August
Vol. 194

항상 여러분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여름 바다의 시원함을 담아
여러분께 즐거운 미소를 전해드립니다.





국립수목원 숲 해설가 이경한 팀장

숲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늘 곁에 있어 그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아름다운 우리 자연.
국립수목원 숲 해설가 이경한 팀장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숲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소통하고 공존하는 푸르른 미래.
이경한 씨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과 언론 간 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곳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 절차와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블로그 pacblog.kr

페이스북 facebook.com/pacnews

Contents

2016 August Vol.194

04 인터뷰

조무제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대법관

06 미디어트렌드

MCN, 취미와 관심 기반의 네트워크 미디어 시대를 열다

07 언론중재법 NOW

언론인들 언론 아닌 언론 같은 팟캐스트

08 문화토픽

오페라 <팔리아치>

09 세상읽기

그래도 폭염은 지나간다

10 인증노트

종교 비판의 자유와 관용의 자세

11 언론법 이모저모

폭로의 조건

12 여행수첩

낭만과 모험을 실은 암트랙, 미국 대륙횡단 여행

14 위원회 NEWS

15 조정중재 사례 / 『4건론』사람』100자평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6년 8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4

편집·디자인 한라에드플러스(주) TEL 031-247-5141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경청과 숙고 관계회복으로의 길

趙武濟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제4회 사법시험 합격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 중재부장(1986-1987)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대법관(1998-2004)



“저를 인터뷰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34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고향이자 모교인
부산의 동아대학교로 돌아와
후학양성에 힘 쏟고 있는
조무제 교수님을 만났다.
조근조근 조심스럽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가 법관 그리고
학자로서 지켜온 신념이 묻어났고,
열은 미소가 서린 얼굴에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여유와 지혜가
풍겼다. 한사코 인터뷰를 고사하던
조무제 교수님이 <언론사람>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자.

Q. 교수님께서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우리 위원회 중재위원이었습니다. 교수님 기억 속 당시 위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A. 당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출범이 오래되지 않아 서울중재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중재부에는 사건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산중재부의 경우 한 해 동안 처리하는 사건 수가 10건 이내였습니다. 그것조차도 중재과정을 거치면서 성실한 의견교환을 통해 취하로 끝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드물게 정정보도 문안까지 작성되었다가도 결국에는 취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재부의 분위기는 자유로운 가운데 화기애애하였으며, 조정은 잘되는 편이었습니다.

Q. 오랫동안 법관으로 또 퇴임 이후에는 법원조정센터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요, 재판제도와 조정제도를 비교했을 때 조정제도가 갖는 장점 내지는 특징으로 무엇을 꼽으시는지요?

A.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 정도’에서 큰 차

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변론, 심리절차에 의한 주장 입증, 사실 인정 그리고 판단으로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승복이 항상 보장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 법이나 소송법에 대한 이해 부족, 증거 수집 및 제출 미비 등으로 인해 변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판력’의 범위도 의식해야 합니다. 법원 재판에서는 양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대로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조정은 양당사자의 의지만 있다면 문제 해결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분쟁이 조정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 판결, 상소로 이어질 경우, 양당사자가 증거나 법률 적용상의 이·불리 그리고 소송비용, 시간, 노력 등을 감수해야 하므로 조정과정에서 양보의 의사가 점차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심리실에서 조정위원의 설명과 이해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두드러지

1) 판결이 확정되면 생기는 효력 중 하나로 후에 같은 사건이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

게 됩니다. 조정결과 또한 재판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이 수긍할 여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해당 심급에서 당사자의 승복에 따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Q. 복잡다단하게 얽힌 현대사회를 반영하듯, 매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수가 늘고 있고 사건 내용 또한 복잡하여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을 이끌어내는 교수님만의 조정기법이 있으신가요?

A. 저만의 특별한 조정기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해가 대립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잘 듣고 기록에 나타나는 자료들을 감안할 때 어떠한 결론이 원만한 관계 즉, 분쟁 전에 당사자들이 유지했던 인간관계, 법률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숙고하는 정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요시간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의견조정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몇 번씩 조정기일을 속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처리시간 면에서 판결과 비슷한 정도로 길게 소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행복한다면 상소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정의 이점을 생각하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Q.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마음이 움직여 합의에 이르는 극적인 순간을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조정 경험담은 무엇일까요?

A.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A가 취미로 수집한 애장품 여러 개(객관적 교환가치 합계도 소액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멀지 않은 이웃에 살아 안면이 있는 B가 이 물품들을 잘못 알고 내다 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상호 폭행과 형사

고소에까지 이르렀는데, 경찰 조사를 받던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B의 유족이 A에게 사고로 인한 사망 시의 일실이익²⁾을 포함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실에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와 번갈아 대면하게 되었는데, 조정위원회는 소송에서 겪게 될 입증의 어려움이나 당사자 간 좋았던 인간관계 등을 상기시키면서 끈기 있게 조정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체의 금전 지급 없이 진심 어린 사과를 주고받는 것으로 화해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Q.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2004년 대법관 퇴임 당시 하셨던 퇴임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당시 퇴임사에서 ‘보편적 사고’나 ‘여론에의 초연함’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닙니다. 언론매체가 가진 사실상의 영향력을 유념하자면 여론의 이름을 앞세운 보도라 하더라도 올바른 사실적 법적 판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 사물의 본질을 벗어난 편견이나 선입감을 지닌 주의 또는 주장이야말로 우리가 사법판단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잃은 주장이라면 법관은 아무리 목청 높게 눈앞에 다가서는 여론이라 할지라도 그로부터 초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에 얽힌 주위로부터 초연하며 보편성을 띤 사색을 이어가는데에는 고독함이 따르게 마련입니다만, 법관은 그 고독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2004년 8월 17일 대법관 퇴임사 중 일부 발췌

Q. 퇴임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자면, 법관이 고독한 직업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교수님께서 법관으로 재직하시던 시절, 어떻게 고독함을 극복하셨는지요?

A. 저의 이야기는 당연한 원칙을 사법부를 떠나는 선배의 입장에서 노파심으로 강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혹시라도 한때의 사회 풍조에 따라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인관계에 빠지는 것을 각자가 경계하자는 권유의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서 법관이 만나게 되는 고독함은 법관이라는 지위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각자가 소화할 몫이라고 봅니다.

Q.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들의 실업난 속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라는 자조적인 유행어마저 생겨났습니다. 현재 가르치고 계신 학생들을 비롯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젊은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국가, 사회 그리고 개인 각 분야가 서로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굳이 청년들에게 조언한다면, 문제 해결은 외부적 여건을 완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각자의 내면적 강인함을 실천하는 양면을 함께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주위의 악화된 여건에 쉽게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치열한 삶을 사는 것은 젊은이들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여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든 마침내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리라고 봅니다.

진행 양재규(홍보팀장)·이미경(부산사무소장)
정리 및 사진 염아영(홍보팀 직원)

2)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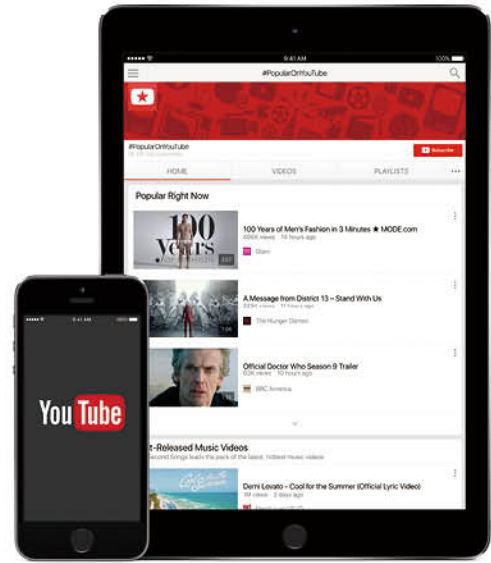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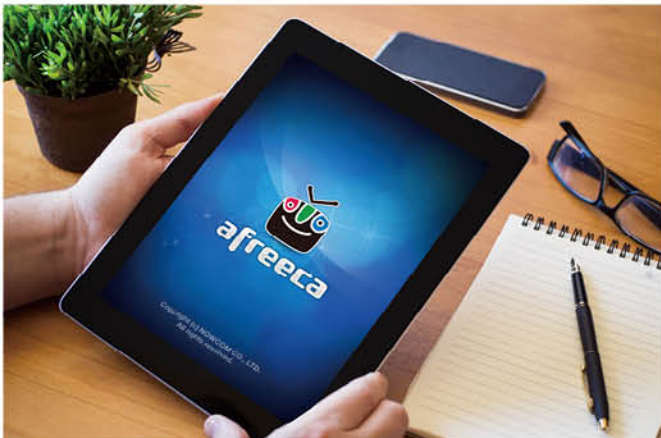
취미와 관심 기반의 네트워크 미디어 시대를 열다

'양띵', '악어', '도티', '캐리' 대한민국 영유아 층부터 10~20대 초반의 팬들까지 열광하는 1인 미디어(유튜브 기반의 개별 채널)이자 취미와 관심 기반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들이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는 이들을 잘 알고 열광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것이다. 아직 대중에게는 생소한 1인 미디어가 2015년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스타트업, 투자기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급부상하였고 현재진행형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가며 성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북미를 기반으로, 2009년~11년부터 동영상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과 이들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MCN*(멀티채널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월트디즈니 같은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인수·합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도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BJ,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이미 존재하였으나 이들이 현재와 같이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5년도 대한민국 스타트업 업계에 분 MCN 창업 및 투자 열풍과 함께 KBS, MBC, SM엔터테인먼트 등 기존 미디어, 콘텐츠 업계의 관심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이러한 1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MCN 사업은 TV나 케이블 광고에 비해 타깃화 된 마케팅이 가능하고, 데이터화 된 지표(웹이나 모바일에서는 기존 미디어와 달리 소비자의 조회수, 시청시간, 시청연령 등의 데이터 수집과 분



석 가능성이)의 분석이 가능하며, 콘텐츠 측면에선 힙하고 깡geek한 소위 "날 것"의 콘텐츠를 생산해낸다는 측면에서 신유형의 영역을 찾는 광고주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나아가 1인 미디어와 MCN 사업자는 콘텐츠 제작, 시청률, 광고판매라는 기존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의 공식에서 벗어나 특유의 창의력, 가성비, 속도를 무기로 자체 IP(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발굴을 통해 글로벌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글로벌 OTT(인터넷을 통해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진출, 트래픽을 활용한 미디어커머스, 캐릭터 사업 등으로 점차 사업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당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슈퍼개인(크리에이터), 거대 네트워크 미디어의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Z세대, 즉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신기술에 민감하고 소비활동에도 적극 활용하는 이들을 주축으로 탄생한 1인 미디어와 MCN 사업자들은 개인화된 취미와 관심사 기반의 콘텐츠를 콜라보레이션, 집단지성 형태로 생산하고, 이를 또다시 구독자 또는 팬을 기반으로 공유하고 소비한다는 사실이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일시되는 것이다. 철저히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을 기반으로 다수 대중mass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하고 소비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관심interest·소통interactive·연결network을 특징으로 콘텐츠를 생산, 소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모처럼 1인 미디어, MCN이라는 신선한 바람이 국내외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 불고 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국내 시장의 한계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신한류 기반의 1인 미디어, MCN 사업자 탄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MCN :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1인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광고 유치 등을 관리하는 미디어 사업

언론인 듯 언론 아닌 언론 같은 팟캐스트 Podcast



2011년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이 기성 가수들을 긴장하게 했다면, <나는 꿈수다>라는 팟캐스트는 기존 언론들을 긴장하게 했다. 정치, 시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나꿈수>는 2011년 4월 27일 첫 방송을 시작한 뒤, 아이튠즈 팟캐스트 오디오 부문에서 인기 순위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팟캐스트 열풍은 현재도 이어져 정치, 경제, 스포츠, 음악 등 다채로운 분야의 팟캐스트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팟캐스트란 애플이 시작한 다운로드 형식의 개인방송으로, 팟캐스트 운영자가 자신이 제작한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을 아이튠즈나 팟빵 등에 올려놓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다운로드하여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다. 이러한 팟캐스트는 특정 분야에 대한 사실관계나 이에 기초한 출연자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간혹 방송 내용 중에는 잘못된 사실적 주장이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팟캐스트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피해자가 민법 제764조나 제750조에 의거 팟캐스트 운영자나 출연자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한 편리하고 빠른 피해회복이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팟캐스트가 언론중재법 상의

조정대상 매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상 조정대상 매체는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다. 이 중 팟캐스트 운영자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카테고리는 인터넷신문이다. 그렇다면 팟캐스트는 인터넷신문인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이다. 이 규정만 놓고 보면 팟캐스트가 일응 인터넷신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팟캐스트가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 팟캐스트 운영자가 아닌, 팟캐스트 사이트 자체를 운영하는 아이튠즈나 팟빵을 상대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언론 기사를 그대로 제공하는 팟캐스트라면 아이튠즈나 팟빵 등은 포털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하지만 인터넷뉴스서

비스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즘은 기존의 언론사가 직접 팟캐스트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언론사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하고 매체를 팟캐스트로 지정하여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러한 경우까지 조정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같은 방송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리면 조정신청 대상이 되고, 팟캐스트에 올리면 조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통상 언론매체는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그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데, 많은 팟캐스트들이 이러한 3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팟캐스트를 가리켜 '대안 언론'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새로운 미디어로서 가지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팟캐스트는 매체 접근의 용이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그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정법상 팟캐스트를 언론조정대상으로 삼는 데 한계가 있다. 현실과 규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셈이다. 명시적 규정으로 팟캐스트를 언론중재법 상의 조정대상으로 삼음지에 대한 면밀한 제도적, 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상을 입어라! 웃어라! 광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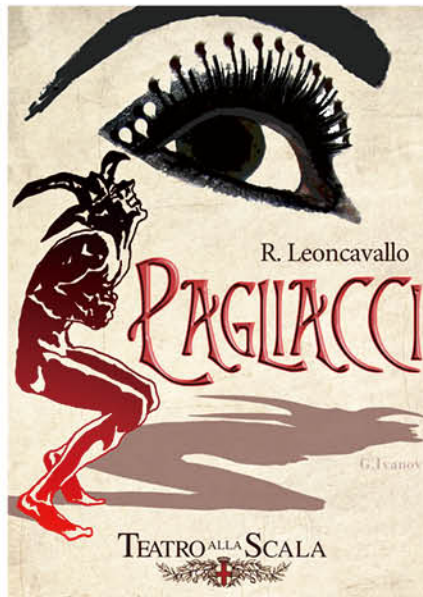
— 오페라 <팔리아치> —

8월 15일은 우리에게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로 기억되지만, 가톨릭에서 이날은 성모승천 대축일로 부활절, 성탄절만큼 중요한 축일 중 하나로 꼽힌다. 이탈리아 작곡가 레온카발로^{R.} Leoncavallo (1858~1919)는 이 한여름의 성모승천 대축일을 배경으로 일어난 치정살인을 소재로 오페라 <팔리아치^{Pagliacci}>를 만들었다.

'광대들'을 뜻하는 제목을 가진 작품 <팔리아치>는 레온카발로가 어린 시절 부정한 아내를 살해한 광대의 재판을 지켜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작품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아 마을에 공연하러 온 유랑극단 단장의 아내가 다른 사내와 눈이 맞는다. 이를 알게 된 단장은 격분했고 감정을 억누르며 무대에 올랐지만 실제 상황과 똑같이 전개되는 극에 그만 이성을 잃고 무대 위에서 아내와 그 사내를 죽이고 만다는 이야기다. 2막으로 나뉜 오페라지만 단막극에 가깝게 짧은 시간 강렬한 충격을 주고 끝나는 이 오페라는 처음부터 큰 성공을 거뒀다.

작품의 주인공으로 당시 천대받던 유랑극단의 광대들이 등장하는데, 이전 오페라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하층민들이 주인공으로 나와 자신들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 오페라와 함께 묶여 자주 공연되는 마스카니^{M.} Mascagni (1863~1945)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Cavalleria Rusticana}>도 마찬가지로 시골의 보잘것 없는 촌부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이들 오페라에는 고귀한 영웅이나 귀족도 없고 인간 본성에 대한 심오한 성찰이나 고뇌도 없다. 다만 자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하층민들의 즉흥적인 감정 표현과 분출에 따른 냉정한 결과만이 있을 뿐이다. 말 그대로 신문 사회면에



흔히 등장할법한 사건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피비린내를 풍기는 충격적 결말에 놀라 벌어진 관객들의 입이 채 다물어지기도 전에 무대는 막을 내린다.

당시에는 이런 종류의 오페라가 흔치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베리시모^{Verismo} 오페라'라고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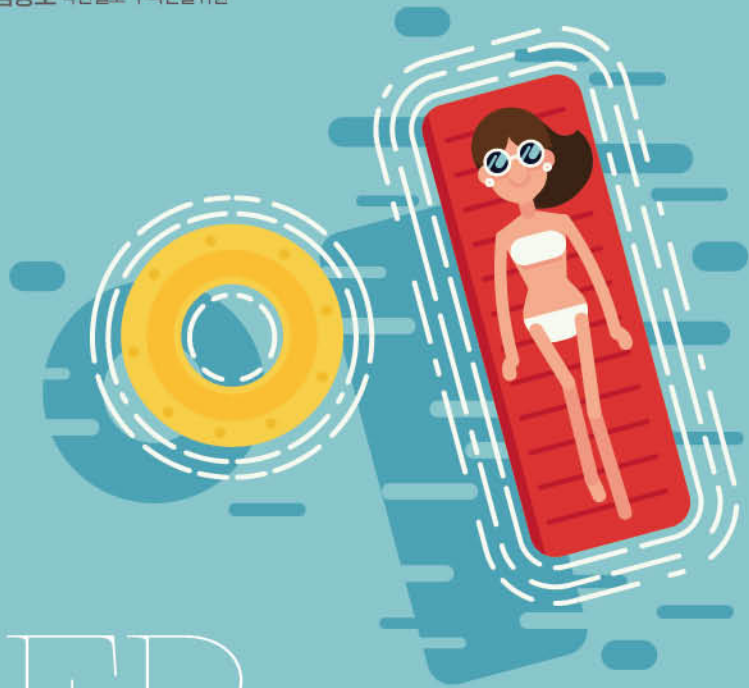
리는 이탈리아 사실주의 오페라의 출발이 되었다. 19세기 유럽에 불어온 사실주의 바람은 당시를 지배했던 고상하고 아름다운 예술에 대해 반기를 들고, 평범한 사람들의 사실적인 삶과 어쩌면 냉혹하기까지 한 현실을 묘사했다. 미술에서 시작된 사실주의는 문학을 거쳐 음악에까지 이르러 예술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다시 <팔리아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젊은 아내가 마을 청년과 몰래 도망가기로 약속한 것을 알아버린 유랑극단의 늙은 단장이자 광대인 카니오는 참담한 심정으로 얼굴에 분칠을 한다. 자신의 괴로운 속사정보다 관객과 약속한 공연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때 카니오는 <의상을 입어라^{Vesti la giubba}>를 노래한다.

의상을 입어라, 하얀 분을 발라라! 손님들은 여기에 돈을 내고 웃으러 온다…… 웃어라 광대여, 모두가 박수 치고 야단이겠지! 피로워 흐느낌이 치솟으면 우스개 짓으로 바꿔라.

카니오가 광대 분장을 하면서 자조적으로 부르는 이 애끓는 아리아는 오늘날까지 드라마틱 테너의 명곡으로 남아있다. 오페라 <팔리아치>는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연극은 끝났다'고 울부짖는 카니오의 절규로 막을 내린다. 인간다운 감정을 감지기 드러낸 광대의 낯선 얼굴에 우리는 당황하지만 천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실주의 오페라야말로 진정한 근대 오페라의 시작이 아닐까.

그래도 폭염은 지나간다



SUMMER

올해 입추(立秋)는 8월 7일입니다. 보름마다 바뀌는 24절기 중 열세 번째인데, 열두 번째가 대서(大暑)였습니다. 대서는 절기상 더위의 절정입니다. 바위도 녹일 듯한 기세의 폭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지만 바로 입추에 자리를 내주는 것을 보면 절정 뒤의 반전은 자연의 섭리인가 봅니다. 가장 춥다는 대한(大寒)도 바로 보름 뒤에 입춘(立春)에 자리를 내줍니다. 절기는 단순히 날씨의 변화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사의 이치를 말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러 번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새벽까지 아열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들 입추가 지나면 그 폭염도 시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추 다음이 처서(處暑)인데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극성을 부리던 모기가 힘이 빠질 정도로 선선히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해도 아침저녁의 선선히움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입추에 들어서면 양지바른 곳에 살랑살랑 불어대는 이른 봄바람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입추와 입

춘은 폭염과 혹한 속을 지나가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폭염의 와중에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쓴 <제2차 세계대전(발췌본·까지)>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바로 그 책입니다. 회고록이니 자신의 관점에서, 승자의 관점에서 쓴 것이니 겉치레는 선입관을 갖고 책장을 열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민주주의가 파시즘에 무릎 꿇느냐 마느냐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로서 내려야만 했던 고독한 결정들 그리고 고뇌와 책임감, 회한... 단순 회고록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책이었습니다.

처칠은 5,0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2차 대전을 '불필요한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독일의 기만 전술도 있었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1차 대전 승전국 지도자들이 막연한 평화주의에 편향돼 안일하게 대처, 막을 수도 있었던 몇 번의 기회를 놓치면서 인류를 대참사로 몰아넣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처칠은 당시 막강한 독일의 무력에 대한 공포감을 숨기지 않고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 수상 취임 직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피

와 노고와 눈물과 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그 유명한 하원 연설로 스스로 공포심을 이겨내고 거국적 단합을 이끌어냅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참혹한 독일의 런던 공습과 대서양 봉쇄를 이겨내지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처칠이었으나 국민은 1945년 선거에서 전쟁 영웅을 외면합니다. 보수당은 선거에서 지고 처칠은 수상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역사는 어느 개인, 어느 세력의 절정과 영광을 시샘하는가 봅니다. '반전의 법칙'이 끊임 없이 반복되는 서사(敍事) 아닌가 싶습니다. 차면 기울고, 열흘 붉은 꽃 없다(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는 옛말은 역시 현실에서도 정확히 작동합니다. 최근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여러 어지러운 정치·사회적 사건들도 돌아켜보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서와 입추, 대한과 입춘. 우리네 절기가 팍팍한 환경에 둘러싸인 인간들에게 뭔가를 말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견디고 난 이후에 올 것만 같은 달콤한 반전을 기다린다면, 폭염도 여유 있게 봐주면서 더불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언론 중재위원회 전체 조정사건 중 종교단체가 신청한 사건은 728건으로 약 13.9%를 차지했다. 신청인 유형을 기준으로 개인을 제외하면 2014년 이후 2년 연속 최다 신청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 A 교단은 자신의 단체를 반사회적 교리를 가진 종교집단이라고 보도한 점에 대해, 또 B 교단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자회견을 보도한 점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였다. 문제는 보도를 한 언론사들 역시 모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종교단체 간 분쟁 시에 중재부는 고민에 빠진다. 교리는 신념과 종교적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단이라니. 과연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보도내용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닌, 교리나 교단에 대한 비판을 두고 중재부에서 정정보도를 권고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의견·논평이 정정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종교적 보도라 하여 다르지 않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

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된다.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까지도 내포되어 있다. 더욱이 우리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 종교적 목적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비례고도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의 신도에게 비판적인 내용을 알리거나 다른 종파의 신도에게 반대되는 종파의 비판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견해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들은 계속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문을 두드린다. 아마도 특정 종교인이나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가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언론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A와 B 두 교단에서 신청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자. 한 언론사는 A 교단의 반론보도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된 반면, 다른 언론사는 B 교단의 어떠한 권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여 조정이 결렬됐다. B 교단의 이단성은 주요 교단의 보편적 인식이라는 것이다. 비록 중재부가 이단 논쟁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반대 종파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배타적인 자세는 못내 아쉬움을 남긴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언론이라 하더라도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양측의 입장이 전달되어야 하고, 반대 종파에도 최소한의 반론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 정도는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은 1960년대 가톨릭신문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에 대해 강조했다고 한다. 이는 신자들만의 교회가 아닌 사회와 함께 하며 타종교인까지도 존중하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김 추기경의 잠언집 <바보가 바보들에게> 중 “사랑”에 대한 글이 새삼 눈에 들어온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자기를 낮춤이 선행된다.

폭로의 조건



가히 '폭로의 시대'다. 공인의 성매매 의혹으로부터 일반인의 사소한 비위 행태에 이르기까지 각종 폭로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패치'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강남패치' '한남패치' '성병패치' '오메가패치' 등으로 이름도 다양한 이들 SNS 폭로 계정은 공인 아닌 사람들의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 게다가, 제보를 토대로 별다른 사실 검증 없이 게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허위사실이 유포될 가능성마저 높다. 이런 식의 폭로는 명예훼손 혹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욕주기'라는 개인적 감정에 기반한 사적 형벌에 해당한다.

물론, 모든 폭로가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언론에 의한 사회지도층의 비리 관련 보도가 대표적인 예다. 또, 흔히 '내부고발'이라고 부르는 조직 구성원의 내부 문제에 대한 폭로도 있다. 이러한 행동은 양심적이면서 용기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의 폭로 또한 얼마든지 공익적일 수 있는 것이다.

A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 코끝이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A의 피부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얇다는 사실을 의사가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A 측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여기서 (성형수술)하면 완전 '좀비'가 됩니다"라고 썼다.¹⁾

A의 폭로에 병원은 소송으로 맞섰다. A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겼다. 법원은 "해당 게시판은 병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느낌과 평가를 자유롭게 적어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긍정적 후기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전에도 식당이나 산후조리원과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관련 이용후기에 대해 법원은 공익성을 인정한 바 있다.

'폭로'의 사전적 정의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던 일을 드러냄'이다.

폭로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대상이나 동기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폭로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다양할 수 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폭로는 항상 불쾌하며 당황스럽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폭로는 정당하고 어떤 폭로는 부당하다는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조건은 무엇일까?

몇 해 전, 병원에서 항암주사를 맞은 아이가 죽는 일이 있었다. 하필이면 마지막 항암치료였다고 한다. 3년 간의 치료를 잘 견뎠는데 마지막 주사를 맞은 지 나흘 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언론에서 기사로 다루졌는데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이 다음과 같다.

지난해 9살 난 아들 ○○ 군을 떠나보낸 부모의 사연을 소개한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빈크리스틴' 오용 의료사고라는 해석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의 어머니는 아들을 치료한 병원과 의사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저 '진실'이다. ... 이런 뜻에 따라 병원과 의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독자들이 사고를 낸 게 누구인지보다 '사고의 진실이 어둠에 파묻히는 구조에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유가족의 바람이다.'²⁾

기사에서 병원과 의사의 이름을 밝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도 되는 일을 하지 않는 데에는 소신이 필요한 법이다. 그 소신이란, 단순한 분노나 복수심의 분출이 아닌,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조차 진실 규명이 어려운 제도적 현실을 공론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 절제된 기사 하나가 폭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폭로는 합리적인 토론을 작동하게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공론장에 올릴 만한 사안인지부터 신중하게 선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개 혹은 보도의 공익성이야말로 정당한 폭로의 조건이 아닐까 싶다.

1) 2016.7.11. 조선일보 <성형수술 실패한 병원, 포털에 "좀비된다" '악플' 쓰면 명예훼손일까> 제하의 기사

2) 2011.5.27. 프레시안 <주사 한번 맞고 죽은 9살 ○○이... "의료사고가 남일?"> 제하의 기사

낭만과 모험을 실은 암트랙

미국 대륙횡단 여행



암트랙사우스웨스트 치프 노선의 종착역인 로스앤젤레스 유니온 스테이션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해 2012년 7월까지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대륙횡단 여행

미국은 '배낭여행자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다.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볼거리들이 곳곳에 널려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돌아보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 가이드북은 미국을 일주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렌트를 권한다. 하지만 자동차를 렌트해 이동하면 차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 물론 기동력이 높아져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가고 시간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지만, 현지인들과 만나는 기회는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필자도 미국 대륙횡단 여행을 계획할 때 고민을 많이 했다. 북미지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한 그레이하운드 Greyhound를 이용할 것인가, 전미 간선 철도망인 암트랙 Amtrak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를 렌트할 것인가. 하지만 그레이하운드를 이용하더라도 일단 버스에 탑승하고 나면 한 자리에 고정되는 반면, 기차에선 객실과 휴게실을 자유롭게 오가며 현지인이나 여행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더는 고민할 게 없었다. 암트랙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1주일 동안 암

트랙을 이용해 뉴욕과 보스턴, 워싱턴 등 동부지역을 여행한 다음, 워싱턴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시카고까지 18시간에 걸쳐 이동했다. 시카고에 4일간 머물며 인근을 돌아본 다음 다시 암트랙을 타고 애리조나 주 플래그스태프로 이동했다. 30시간이 걸렸고, 기차 안에서 네 끼를 먹었다. 플래그스태프를 기점으로 그랜드캐니언과 후버댐, 라스베이거스를 신나게 돌아다닌 다음, 다시 야간열차를 타고 서부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했다. 총 이동 거리가 4,500km, 기차에서 보낸 시간만 60시간에 달했다. 육중한 철마는 가도 가도 끝없는 중부 대평원과 로키산맥~콜로라도 고원, 뉴멕시코 주의 거칠고 황량한 사막지대를 거침없이 달렸다. 수백, 아니 수천 마리의 말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대륙을 질주하는 듯한 낭만과 모험의 여정이었다. 핏빛 노을을 던지며 평원 끝으로 넘어가는 석양에 넋을 빼앗기고 감상에 젖는가 하면, 다음날 반대편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벅찬 가슴으로 맞았다.

시카고에서 열차에 오르면서 시작된 중부 대평원은 다음날 오전까지 20시간 동안 이어졌고, 콜로라도 고원을 3시간에 걸쳐 힘겹게 넘었다. 뉴멕시코 주와 애리조나 주로 넘어가자 거칠고 황량한 황무지가 작렬하는 태양의 세례를 받으며 뜨겁게 타들어 가고 있었다. 야자수가 가로수가 태평양의 미풍에 몸을 흔드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자 대륙횡단을 마쳤다는 희열이 온몸을 감쌌다.



암트랙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들

필자는 미국을 동에서 서로 연결하는 암트랙의 여러 노선 중 시카고에서 캔자스시티, 콜로라도 주의 라훈타, 뉴멕시코 주의 앨버커키를 거쳐 로스앤젤레스로 연결되는 사우스웨스트 치프 노선을 이용했다. 다른 동~서 횡단 루트를 소개하면, 캐나다와의 국경 아래 미국 북부의 주요 도시를 통과하는 엠파이어 빌더 노선이 있고, 텐버를 거쳐 로키산맥을 넘고 솔트레이크시티 등 중부 주요 도시를 거치는 캘리포니아 제퍼 노선이 있다. 모두 시카고에서 서부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하는데, 각각 거치는 지역과 도시가 달라 독특한 풍경과 역사,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미국 동부와 시카고를 연결하는 노선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은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 이와 별도로 동남쪽 끝 플로리다 주의 올랜도에서 제즈의 고향 뉴올리언스를 거쳐 텍사스 주의 휴스턴과 엘 파소, 애리조나 주의 투산, 로스앤젤레스까지 멕시코 접경 위쪽의 미국 남부 주요 도시를 거치는 섀넌 리미티드 노선이 있다. 올랜도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가 48시간, 여기에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올랜도까지 걸리는 20~30시간을 합하면 기차 탑승 시간만 70~80시간이 걸린다. 미국에는 유럽의 유레일패스와 비슷한 USA 레일패스가 있어 이를 이용하면 대륙횡단 여행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USA 레일패스엔 15일 동안 8개 구간segment을 여행할 수 있는 15일 패스, 30일 동안 12개 구간을 여행할 수 있는 30일 패스, 45일 동안 18개 구간을 여행할 수 있는 45일 패스 등 세 가지가 있다. 가격은 각각 459달러, 689달러, 899달러다. 구간이란 거리와 무관하게 열차에 탑승하는 횟수를 말한다. 중간에 내려 관심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암트랙을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여행할 수 있다.



암트랙 열차. 대륙을 거침없이 질주할 것 같은 육중한 힘이 느껴진다.



미국 사회의 축소판, 암트랙의 참맛

암트랙을 이용해 미 대륙을 횡단하는 것은 단지 차창으로 스쳐 지나가는 자연을 감상하고, 중간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광을 바라보고, 기차에 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지나온 삶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반추하는 여정이며, 성찰의 시간이다. 누가 하라고 해서도 아니며, 내가 하려고 해서도 아니다. 광활한 대지를 질주하는 기차에 몸을 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이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여유와 함께 잃어버렸던 자신의 참모습을 되찾게 해주고, 실의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는 곳이다. 광야를 달렸던 인디언과 서부 개척자들의 모험과 도전, 그들의 용기를 여행자의 마음에 되살아나게 해준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길한 상상력의 산물인 마음의 불안을 버리고, 이 철마와 같이 앞으로 나가도록 힘을 준다.

암트랙 여행의 최대 묘미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필자도 뉴멕시코 주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는 중년 부부, 앨버커키의 미술 교사, 일리노이 주 옥수수 생산자협회 부회장 등 다양한 사람과 만나 대화를 주고 받았다. 50대 초반의 미술 교사와는 콜로라도 고원으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거의 네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여행과 삶, 예술과 사회,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어가 유창하고 어눌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서먹하지만 말문을 트고 마음을 열자 암트랙에 탄 승객들은 모두 '내가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되었다. 암트랙은 미국 사회의 축소판이자 하나의 작은 세계였다. 평음을 내며 대지를 가르는 육중한 철마는 미국을 닮았고, 거기에 몸을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은 다양성이 춤을 추는 미국 사회를 닮았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대자연이 미국의 걸모습이라면 사람과의 대화는 각자 스토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다. 세계에 배낭여행자의 무덤은 없었다.



휴게실. 천장에도 유리를 설치해 바깥 풍경을 감상하기 편리하도록 했다.

COMMISSIONERS 위원동정

• 김동국 중재부장 강원법률실무연구회에서 사회

김동국 중재부장(강원중재부,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은 6월 20일 춘천지법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강원법률실무연구회'에서 사회를 맡았다. '사법부 신뢰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연구회에서는 '사법불신과 법원개혁', '1심 판결을 양형부당으로 파기함에 있어 항소심의 재량의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 변민선 중재부장 양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변민선 중재부장(제주중재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은 7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년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변민선 중재부장은 2010년부터 이혼 위기 가정 내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양육 및 이혼상당제도'를 도입해 여성과 아동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 발간

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현황 및 제재 사례 등을 수록한 심의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는 불공정 선거보도로 제재결정한 55건의 심의사례와 후보자의 시정요구 21건 등 총 76건의 결정문 전문을 수록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e-book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상 위원장, 충북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7월 12일, 충북중재부 중재위원 및 충북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뉴스소비가 주된 흐름이 된 언론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언론피해 양상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언론피해구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잘못된 온라인 기사의 복제·전파 및 위법한 기사 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 분쟁을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용성
심리본부 기사심의팀



언론중재위원회
새 얼굴



박선영
교육본부 교육운영팀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 살은 온다" 대학생 때 인상 깊게 읽었던 최승자 시인의 <삼십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고 보니 이 시구절이 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학생-고시생-군인-취업준비생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이십 대를 훌쩍 지나 서른 살이 되었는데, 이대로 살 수도 없고, 이대로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른 살 첫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 이젠 조금 살 만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망망대해에서의 오랜 방향을 달래주고도 남을 곳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 관심사였던 미디어 분야와 제 전공인 법학을 접목할 수 있는 최적의 직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후회 없는 30대와 그 이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갓 자대에 배치된 신병처럼 어색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능숙하게 제 몫을 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믿고 뽑아준 '언론중재위원회'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물둘이던 2013년, 중재위원이었던 교수님께 언론법제 수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언론중재위원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언론법제를 공부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개념은 '독수의 과실'이었습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 독이 있는 열매가 열리듯, 아무리 잘 쓴 기사라도 취재 과정이 위법했다면 기사는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니다. 학보사에서 고발성 기사를 쓰며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는 독수의 과실 이론이 기자에게 가혹하던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취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지는 요즘, 원칙을 지켜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품격을 보여주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발생 시, 무료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언론피해구제시스템입니다. 언론학을 전공하며 관심있게 공부했던 기관에서 일하게 됐다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일원으로서 언론과 국민을 잇는 사회적 역할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신청인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해 방송, 기사삭제 및 취재 경위 해명으로 조정성립

A 방송사는 대기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신청인이 해당 대기업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방송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고, 다른 사안에 대한 답변을 임의 편집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해당 대기업과의 계약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A 방송사는 촬영 및 공표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해당 방송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모자이크 및 음성 변조를 통해 신청인의 신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신청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신청인을 알아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이에 공감하여 신청인을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이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신청인에 관한 장면을 삭제하고, 취재 경위에 대한 해명자료를 작성해 해당 대기업에 전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일방의 주장만을 전달한 보도,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금 지급 등으로 직권조정결정

B 신문사는 신청인 회사가 무단으로 유명 기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부적절한 실적을 쌓았으며, 부적절한 주식 상장 절차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B 신문사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하였으며, 신청인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신청인의 반론을 수용할 여지가 있으며 전체 보도 중 일부 인용이 잘못된 점에 한하여 기사를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일방의 주장만을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보도했으며 주식 상장이 적법절차에 의해 완료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입장 차가 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하여 해당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REVIEW

7월호 100자평

권혜은 님

[인터뷰] 저도 방송에 출연한 경험이 있는데, 방송이 나간 이후 예쁘지 않다는 외모 지적인 물론이고 각종 추측성 댓글이 달려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무차별적이고 원색적인 비난도 허용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악플로 상처받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는 민병철 이사장님의 말에 공감이 됩니다.

유은경 님

[미디어트렌드] 언론이 권력 감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대중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팩트체크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뉴스의 파급속도와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초아 님

[여행수첩] 평소 브라질은 치안이 안 좋아 여행 기피 국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브라질에 대한 편견도 사라지고 브라질의 새로운 매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쿠리치바 도시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브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결 친숙해진 느낌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http://pacblog.kr>) 『5년째 사랑』 8월호 발간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감이나 의견을 8월 19일(금)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되는 100자평을 남겨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트콘(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

일반 연구논문 공모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015년 <미디어와 인격권>을 창간, 디지털시대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을 다룬 기획논문 등 총 8편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에 수록할 일반 연구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열정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주제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응모자격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관련분야의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원고마감 2016년 8월 16일(화)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최대 180매)

논문접수 이메일 접수(journal@pac.or.kr)

『미디어와 인격권』에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은 원고료(200만 원)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조하시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02)397-3042로 문의 바랍니다.